

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·유예자 및 비대상자 안내

(2022년도와 동일기준 적용)

1. 면제대상자 (관련 근거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)

○ 면제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군 복무 중인 사람(단,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해연도 6개월 이상 군 의무복무* 중인 자(해당 자격 종사자는 제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군 의무복무(현역병, 전환 복무자, 보충역 등) 중인 사람을 일컬음 - 군 복무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보수교육 면제, 6개월 미만이면 보수교육 이수 <p>(예) 군 의무복무(현역병, 전환 복무자, 보충역 등 포함)로 `22.11월 입대 후 `23.8월에 제대한 경우, `22년 보수교육 이수, `23년 보수교육 면제` ⇒ 현역병, 전환 복무자(의무경찰, 의무소방), 보충역(사회복무요원) 등 군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은 면제임.</p>
○ 면제 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(자격증 발급일 기준) <p>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「자격신고시스템」 접속 ② “보수교육 면제·유예 신청서”작성 및 제출(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: “대상”) (증명서류 예시)군 복무 확인서, 응급구조사 자격증(사본 가능)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수교육 면제 확인은 해당 연도에 한하므로, 같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면제신청을 해야 함 - 처리 기간 최대 5일

2. 유예대상자 (관련 근거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)

○ 유예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본인의 질병으로 병가 또는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서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■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로서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■ 소방관서 등에서 당해 연도에 8개월 이상 응급구조사 자격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갑자기 응급구조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변경된 자로서 당해 연도의 남은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
○ 유예 신청방법	<p>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「자격신고시스템」 접속 ② “보수교육 면제·유예 신청서” 작성 및 제출(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: “대상”) [증명서류 예시]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(직무 분야, 휴직기간 명시), 입·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(입원치료기간 명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해당 연도에 한하므로, 같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함 - (처리 기간) 최대 5일
○ 비고	<p>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,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</p>

3. 비대상자 (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업무지침)

○ 비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응급구조사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- 해당 연도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단 1일도 종사하지 않은 사람
○ 비대상자 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「자격신고시스템」 접속 ② “보수교육 면제·유예 신청서” 작성 및 제출(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: “비대상”) <p>[증명서류 예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미취업자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, 자기근무이력확인서(건강보험심사평가원) ● 타직종재직자 :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(응급구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이 명시되어야 함) ● 해외체류자 : 출입국사실확인서,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년도 비대상자일 때 2024년 1월부터 비대상자 신청 가능 - 보수교육 비대상자 확인은 해당 연도에 한하므로, 같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비대상자 신청을 해야 함 - (처리 기간) 최대 5일

※ 기타 세부사항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